



# 영 등 포 구

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**제목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(여의대방2역세권)**

우리 구 여의대방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가. 고시내용: 붙임 고시문 참조

나. 고시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

붙임 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(여의대방2역세권) 1부. 끝.